

(2017년 10월 30일 수정본)

제1조 (기간)

1.1 본 약관은 매도인이 이를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한국오가논이 이를 수정하거나 해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2조 (조건)

2.1 (승락) 한국오가논이 본 약관에 따라 송부한 주문서는, 그 주문서에 명시된 승락기간 내에 매도인이 그 이행을 승인하거나 그 이행에 착수하여 이를 승락한 때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된다. 매도인의 견적서, 승인서, 이행의 개시 또는 청구서에 추가된 조건은 반대청약을 구성하며, 한국오가논이 이를 서면으로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오가논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서면계약의 조건은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포함된 이와 상반되는 조건에 우선 한다. 한국오가논은 수시로 본 약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2.2 (품질) 사전 검사 또는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구매는 한국오가논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구매한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오가논은 그 독자적인 선택에 따라 매도인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이 때 왕복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이 매도인의 도안, 사양, 샘플, 명세서에 부합하고, 주문서에 이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미사용의 새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품질보증을 받으며, 매도인이 진술한 목적에 부합하고 판매가능하며 고품질의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승락 후 1년 이내에는 한국오가논과 결함을 발견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오가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또한,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에게 제조자의 품질보증을 모두 이전한다.

매도인은, 본 약관에 따른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데이터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원본이며, 정확하고, 알아볼 수 있으며, 완전하고, 잘 관리되며, 검색·확인할 수 있고, 의도적/비의도적인 조작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도록 할 것을 동의한다. 상기 내용은 해당 데이터/ 문서의 보관 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한다.

2.3 (수량) 매도인이 발송한 제품의 수량이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지정된 수량이나 서면으로 합의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국오가논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초과된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2.4 (가격)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증액될 수 없다.

한국오가는 주문서에 특정 품목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청구 당시의 정가(list price)에서 관련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한다. 주문서 유효기간 중 매도인이 유사한 조건·수량의 유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견적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이 주문서 에 명시된 가격을 대체한다. 주문액이 그 최고한도의 80%에 이른 경우에는, 매도인은 한국오가는의Procurement Group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2.5 (대금지급) 한국오가는은 적법하게 작성된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그러나 주문서 앞면에 이와 다른 대금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2.6 (할인) 매도인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기간은 한국오가논의 청구서 담당부서가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2.7 (발송)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따라 구매한 제품은, 그 주문서 앞면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송된다.

2.8 (인도)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따른 이행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즉시 그 사실을 한국오가논에게 고지한다. 주문서 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조건과 시기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오가논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9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전쟁, 화재, 홍수, 파업, 노동쟁의, 사고, 폭동, 천재지변, 정부조치, 기타 자신의 통제 범위를 초과하는 사태로 인하여 본 약관이나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10 (양도)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약관에 따른 한국오가논 주문서상의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회사, 법인 또는 정부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2.11 (한국오가논 영업장소에서의 이행) 주문서에 따라 매도인이 한국오가논 영업장소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주문서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 상해, 물적 손해,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비용 지급으로부터 한국오가논을 면책 및 보상한다. 또한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오가논이 요구할 수 있는 형식과 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재물손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한국오가논에게 제공한다.

2.12 (기타)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이 명시적으로 서면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발송을 위한 보험, 포장, 운송 비용을 한국오가논에게 청구할 수 없다.

2.13 (비독점) 양당사자는 본 약관과 한국오가논 주문서가 매도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본 약관과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한국오가논이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14 (독립적인 계약당사자) 본 약관에 따른 한국오가논 주문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로 행동하고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로 간주된다.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따른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매도인과 그 피용자, 대리인, 임원을 한국오가논의 피용자, 합작사업자, 대리인, 동업

자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을 위하여 또는 한국오가논 이름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매도인의 피용자, 방식, 설비 및 장비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지시하고 통제한다.

2.15 (준거법) 본 약관과 본 약관에 따른 주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16 (분리가능성) 본 약관 또는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본 약관

또는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다른 조항은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로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2.17 (완전합의) 본 약관은 한국오가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내고, 매도인이 이전에 작성한 이와 모순되는 조항을 대체한다. 본 약관과 한국오가논 주문서는 한국오가논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주문서에 대한 승인서, 한국오가논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매도인의 반대청약과 관련된 서류,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 한국오가논이 송부한 주문서, 매도인의 의무 이행,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의하여 부여된 각 당사자의 권리는 본 약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2.18 (제목) 본 약관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19 (특허권) 매도인은 본 약관에 따라 인도된 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오직 자신의 비용으로 특허권 침해 주장에 근거한 모든 소송과 손해로부터 한국오가논을 면책 및 보상한다.

2.20 (해지) 한국오가논은 매도인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함으로써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 통지를 수령하면 매도인은 그 통지에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즉시 관련 업무와 재료, 설비, 공급품에 대한 주문을 중단하고, 한국오가논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 발송된 주문과 기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 이후에는, 매도인은 이미 진행 중인 업무를 유지·보호하고 이미 진행 중인 업무 및 그 운송과 관련된 재료, 시설, 장비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작업만을 할 수 있다. 해지가 된 경우, 매도인은 취소불능인 확정계약에 따라 한국오가논이 취득하는 목적물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이미 이행된 계약 내용에 비례하는 미지급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상기 내용이 해지시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보상이다.

2.21 (소유권) 매도인은, 자신이 본 약관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의 완전한 소유자이며, 그 제품에 어떠한 종류의 청구, 유치권, 담보 또는 담보물권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 및 진술한다. 본 약관에 따라 구매된 제품의 소유권은 한국오가논이 그 제품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오가논에게 이전된다.

2.22 (비밀정보보호)

매도인은 한국오가논과 그 계열회사 및 그 각 직원, 대리인, 수급인, 자문인이 매도인에게 공개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정보”에는 한국오가논 및/또는 그 계열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하거나 매도인이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한국오가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마케팅, 영업, 재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영업비밀, 노하우,

재산적 가치 있는 정보, 방식, 절차, 기술, 정보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라 매도인이 발견 또는 개발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의 상기 비밀유지의무는 본 주문서가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른 의무 이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복제하지 아니한다.

본 주문서에 따라 서비스가 완료되거나 본 주문서가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사본을 반환하거나 한국오가논의 요구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의 본 조 위반으로 인하여 한국오가논이 입게 되는 손해는 쉽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오가논은 법령상의 다른 구 제수단을 행사 할 수 있음은 물론 가처분, 특정 행위에 대한 이행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23 (개인정보보호)

매도인은 본 주문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관계 법령 및 한국오가논의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개인정보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업무를 매도인의 수탁업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재위탁한 경우, 매도인은 재수탁자로부터 본 조항에 준하는 서면을 받고 한국오가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오가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임직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매도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이 개인정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실시하는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인정보주체 또는 한국오가논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수정·파기한다.

매도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오가논의 내부규정 위반, 기타 본 조항 위반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정보침해·유출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한국오가논의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2.24 (사업파트너 행동강령)

한국오가논은 한국오가논과 그 사업파트너가 인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제공, 환경 보호, 적절한 관리시스템의 채택, 윤리적인 실무관행을 비롯한 최고 수준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 약관 및 주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매도인의 본 약관 및 주문서에 따른 다른 의무 이외에도,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Business Partner Code of Conduct (“Code”)(그 사본은 https://www.organon.com/wp-content/uploads/sites/2/2021/05/Business-Partner-Code-Of-Conduct_v1.pdf 에서 구할 수 있다)의 명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할 것이 요망된다. 매도인은 Code 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오가논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면을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본 조항 및 Code에 있는 의무와 본 약관 기타 조항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본 약관의 기타 조항이 우선한다.

한국오가논은 매도인의 Code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영업, 장부와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한국오가논은 감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며,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기 통지를 받으면 매도인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 수령 사실을 알리고,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가 실시될 날짜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한국오가논 또는 한국오가논이 지정

한 제3자는 감사의 일환으로 매도인의 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다. 본 감사 권한은 본 약관에 따라 부여되는 다른 감사 권한에 추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감사 결과 Code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오가논은 모든 시정조치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 시정조치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오가논은 가능한 경우, 시정조치나 이에 대한 계획수립에 있어서 매도인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도인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한국오가논으로부터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수단에 더하여 한국오가논은 본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2.25 (Supplier 준수사항)

매도인의 본 약관 및 주문서에 따른 다른 의무 이외에도,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Supplier Performance Expectations (그 사본은 <https://www.organon.com/wp-content/uploads/sites/2/2021/04/Organon-Supplier-Performance-Expectations.pdf> 에서 구할 수 있다)의 명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할 것이 요망된다. 본 조항 및 한국오가논의 Supplier Performance Expectations에 있는 의무와 본 약관 기타 조항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본 약관의 기타 조항이 우선한다.